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32663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326637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10. 4 선고 2022가단11222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김형일, 박미혜, 임수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성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3. 1. 11.

판결 선고 2023. 2. 1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10. 4. 선고 2022가단11222 판결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0. 14.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산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103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체결

1) 원고는 C의 대출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계산에 의하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조(이자율등의 변경)에 의하여 이자율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하였고, 채무자가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금 전부를 변제기로 약정하였다.

#### 나. C의 기한의 이익 상실

C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금 납입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2. 7. 3. 기준 C의 대출원리금은 16,666,420원[= 대출편입원금 14,998,999원 + 편입이자금 1,644,705원 + 편입원금이자금 22,716원]이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C는 2021. 10. 14. 자신의 모친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C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I에 대하여 3,721,000원, J 주식회사에 대하여 13,519,000원, K 주식회사에 대하여 603,000원, L 주식회사에 대하여 35,148,000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올진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M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므로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2021. 10. 14.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20. 10.경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김지영**

**판사윤남현**

**별지**